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9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8
- 다. 상 정 일 자 : 2000. 12. 18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임 양 환

나. 개정사유

- 각종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 조례 제12조의 “우수하거나”를 “우수하나”로 개정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동 조례 제12조제1항중 “우수하거나”를 “우수하나”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활동한바 있는 “각종 기금운용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동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하는 개정안으로써,
- 동 조례의 문맥을 정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정절차등 관련 법률과의 상충여부등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동조례 제1조(목적)에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제12조(장학생의 자격)에서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 출신」으로 되어 있어, 제12조의 재능이 우수 「하거나」를 「하나」로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조례중 “하거나”를 “하나”로 개정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출신(본적을 화순군에 둔자) 및 군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 재 생 략 2. 기 재 생 략 3. 기 재 생 략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 - - - -</p> <p>-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